

의안번호	2220462
의 퇴 인	곽규택 의원
회 답 일	2026. 10. 2.
추 계 번호	26B3957

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(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의 조성)	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지정하고, 창업지원센터·연구개발센터 등 해양산업 진흥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12조(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등) 신설	국가 및 부산광역시가 대학·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특화 교육과정 운영 및 해양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·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13조(디지털 해양산업의 육성) 신설	국가나 부산광역시가 해양 빅데이터 센터, 스마트항만 플랫폼, AI 기반 해양예측·수산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해양산업 육성에 필요할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14조(혁신지구 내 민간기업 등에 대한 지원) 신설	국가와 부산광역시가 혁신지구 내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국·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 감면, 정책자금·신용보증 등 금융지원, 인건비 보조 및 교육·연수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15조(외국인 투자 유치 및 국제교류 확대) 신설	국가와 부산광역시가 외국인투자 유치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어 기반 서비스 인프라 확충, 국제 해양박람회·기술포럼 개최 및 해외 전문인력 유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(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의 조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2조(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등) 신설	
3	안 제13조(디지털 해양산업의 육성) 신설	
4	안 제14조(혁신지구 내 민간기업 등에 대한 지원) 신설	
5	안 제15조(외국인투자 유치 및 국제교류 확대) 신설	

2. 상세 사유

□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(안 제10조 및 안 제13조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의 조성 및 해양산업 진흥시설 및 디지털 해양산업 관련 인프라의 구축·지원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개정안은 혁신지구의 지정 범위와 규모, 시스템 구축비 및 운영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,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□ 해양산업특화 교육·인재양성 및 실증사업의 지원(안 제12조 및 제13조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나 부산광역시가 해양산업특화 교육과정 운영, 전문인력 양성 및 지능형 장비 개발 등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개정안은 지원 대상 대학·연구기관의 수, 교육·훈련 인원 및 국가와 부산광역시 간 재원 분담 비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□ 입주기업 지원 및 국·공유재산 감면(안 제14조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나 부산광역시가 혁신지구 내 민간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에 국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 감면, 정책자금 지원 및 신용보증 등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개정안은 지원의 세부 기준과 내용, 지원 방법·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□ 외국인투자 유치 및 국제교류 사업 수립·추진(안 제15조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나 부산광역시가 혁신지구 내에 외국인투자 및 해외 연구기관의 유치를 위해 세제상의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개정안은 외국어 기반 서비스 인프라 확충, 국제 해양박람회·기술포럼 개최 및 해외 전문인력 유치 프로그램 등의 사업 규모와 추진 일정, 지원 대상 및 사업별 소요 비용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위진수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위진수	02-6788-4650	wjinsu@assembly.go.kr